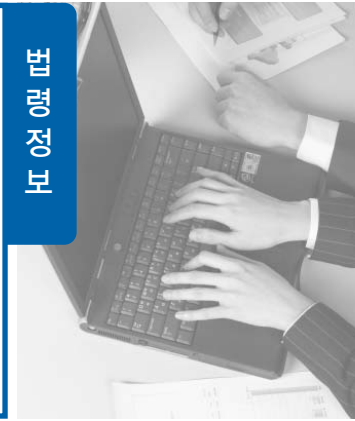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기능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 등



- 소방방재청은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기능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토록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안 제27조, 제29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취소 청문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며,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안 제32조)

붙임: 입법고안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2 - 17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2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소, 청문에 관한 기능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심의결정('10.9.16) 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법령정보

결과가 통보(10.10.4)됨에 따라 법률을 일부 개정 이양토록 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청문대상 확대를 위해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관을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7조)

-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려는 것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9조)

- 성능검사대행자가 부정한 방법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취소 청문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청문대상 확대(안 제32조)

- 성능검사대행자가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청문을 실시토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재해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64 (팩스 5459)
- 이메일 : adhee65@korea.kr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영업이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동 개정 법률(안)은 제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하는 사항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상정(12.2.7. 심사보류)

법률 제 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대행하고자 하는”을 “대행하려는”으로, “소방방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한다.

법령정보

제32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나 소방방재청장은”을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으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 등의 지방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그 밖의 행위나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행위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7조 (성 능 검 사 대 행 자 의 등 록 등) ① _____ 대행하려는 _____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_____ 변경하려는 경우.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_____ 경우 _____ 경우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소방방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속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_____ 특별자치도지사는 _____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_____ 하여야 _____.

자연재난 복구비용산정기준 개정고시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2-168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하사 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1) 구호금	사망·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사망·실종자(세대원)	인	5,000,000	
	부상자(세대주)	인	5,000,000	
	부상자(세대원)	인	2,500,000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구호비	응급구호비	1인1일	7,000	
	장기구호비	1인1일	7,000	
(2) 생계지원	양곡 5가마(80kg)	5가마	800,500	
다. 학자금(수업료)				
(1) 비전문계	특급지(서울)	6개월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개월	700,2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6개월	685,800	
	2급지 가(읍지역)	6개월	527,400	
	2급지 나(면지역)	6개월	456,600	
	3급지(도서벽지)	6개월	348,600	

법령정보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파/유실	동	30,000,000	
	반파	동	15,000,000	
(2)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600,000	
(3)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임대료	세대	3,000,000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물	농경지 유실	m ²	7,508	
	농경지 매물	m ²	4,200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m ²	82,715	
	철골유리온실	m ²	117,390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m ²	30,800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m ²	7,940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m ²	9,400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m ²	3,330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m ²	3,550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m ²	3,420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m ²	2,280	
	내재해형-자동화(07,08형)	m ²	34,600	
	내재해형-자동화(10형)	m ²	48,080	
	내재해형-단동(정부)	m ²	15,000	
	내재해형-단동(딸기)	m ²	16,790	
	내재해형-단동(참외)	m ²	5,700	
	내재해형-단동(광폭 아치형)	m ²	20,760	
	내재해형-단동(광폭 트러스형)	m ²	35,280	
	내재해형-단동(민간1,2형)	m ²	15,000	
	내재해형-단동(민간3,4형)	m ²	25,000	
	내재해형-단동(민간 8)	m ²	18,040	
	내재해형-단동(민간광폭형)	m ²	45,000	
	내재해형-연동하우스	m ²	40,000	
	내재해형-과수하우스	m ²	25,000	
-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m ²	4,700	
	차광시설A형-연목240×3.6×3.0cm	m ²	2,910	
	차광시설B형-연목180×3.6×3.0cm	m ²	2,750	
-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m ²	403,000	
	판널재배사	m ²	151,000	
	간이재배사	m ²	75,000	
-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m ²	1,720	
	지주시설	m ²	830	
	방조망	m ²	1,600	
	관수시설	m ²	980	
	방풍망시설	m ²	96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창고 등 부대시설	간이비가림시설	m ²	1,199	
	농산물저장창고(일반)	m ²	300,000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m ²	800,000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562,500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m ²	177,000	
- 양액재배시설	내부시설	m ²	10,800	
	- 염전시설	염전 소금창고	m ²	208,500
염전 해주		m ²	69,500	
결정지		m ²	1,883	신설
- 산림시설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m ²	27,008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m ²	4,460	신설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m ²	5,090	신설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m ²	6,340	신설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m ²	6,700	신설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m ²	7,140	신설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과수목포함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				
- 농작물	일반작물(무,배추기준)	ha	2,204,286	
	시설채소(엽채류)	ha	2,968,000	
	시설채소(과채류)	ha	3,920,000	
	시설채소(토마토,풋고추,가지)	ha	2,841,108	
	시설채소(오이,딸기)	ha	6,852,692	
	시설채소(파프리카)	ha	9,017,292	
	인삼(묘삼기준)	ha	15,051,400	
	과수(묘목기준)-사과	ha	12,385,219	
	과수(묘목기준)-배	ha	2,707,105	
	과수(묘목기준)-복숭아	ha	2,179,520	
	과수(묘목기준)-포도	ha	2,204,895	
	과수(묘목기준)-단감	ha	1,960,000	
	과수(묘목기준)-감귤	ha	3,645,361	
	과수(묘목기준)-참다래	ha	3,073,284	
	화훼-백합(생육초기)	ha	40,870,435	
	화훼-장미(생육초기)	ha	29,800,295	
	화훼-선인장(생육초기)	ha	27,739,079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ha	31,681,104	
	화훼-안개초(생육초기)	ha	12,000,000	
	화훼-국화(생육초기)	ha	12,957,280	
	화훼-카네이션(생육초기)	ha	42,315,200	
	화훼-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ha	19,586,000	
	화훼-호접란(생육초기)	ha	65,765,978	
	버섯류(종균기준)	ha	42,000,000	
	녹차(묘목기준)	ha	6,586,640	
	구기자(종묘기준)	ha	1,620,996	

방재정보광장

별첨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산림작물	당귀(종묘기준)	ha	1,845,612	
	산약(종묘기준)	ha	2,839,808	
	뽕나무(누에 사육용)	ha	1,965,200	
	뽕나무(오디 생산용)	ha	8,302,000	
	표고자목(1.2m)	본	2,200	
	잔디(파종생산비)	m ²	183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m ²	2,171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m ²	2,171	
	유실수(묘목기준)-밤	ha	1,067,000	
	유실수(묘목기준)-대추	ha	1,986,800	
	유실수(묘목기준)-뽕은감	ha	1,745,200	
	유실수(묘목기준)-호도	ha	1,180,000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m ²	335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m ²	716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m ²	655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m ²	542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m ²	255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m ²	122	
	산림작물(종자대)-더덕	m ²	305	
	산림작물(종자대)-두릅	m ²	237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m ²	161	
	산림작물(종자대)-산양삼	m ²	808	신설
산림작물(종자대)-약초류	m ²	266	신설	
② 농약대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ha	99,880	
	병해충방제(채소류)	ha	286,500	
	병해충방제(과수류)	ha	469,500	
	병해충방제(인삼)	ha	166,234	
	병해충방제(약용류)	ha	132,120	
	병해충방제(화훼류)	ha	1,302,602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 · 유실	우사-한육우사	m ²	121,000	
	우사-유우사	m ²	158,000	
	돈사-번식돈사	m ²	239,500	
	돈사-비육돈사	m ²	165,000	
	계사-산란계사	m ²	200,500	
	계사-육계사	m ²	168,500	
	토사-육토사	m ²	70,000	
	종오리사	m ²	130,000	
	육용오리사	m ²	130,000	
	부화장	m ²	504,000	신설
(2) 축산분뇨시설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m ²	39,000	
	분뇨처리시설-한육우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젓소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돼지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닭(평사)	m ²	78,50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3) 초지유실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m ²	78,500	
	분뇨처리시설-오리	m ²	78,500	
	초지복구(경운초지)	ha	3,854,000	
(4) 잡설파손	초지복구(불경운초지)	ha	2,763,000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아잠실)	m ²	297,000	
	애누에공동잠실(브럭및패널형)	m ²	247,500	
(5) 가축입식	일반잠실(브럭형)	m ²	172,420	
	조상육잠실(조립식)	m ²	27,500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1,400,500	
	한우-육성우	마리	1,560,000	
	젖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341,728	
	젖소-육성우	마리	1,102,000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62,000	
	돼지-육성돈	마리	139,000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427	
	육계-중추	마리	740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611	
	산란계-중추	마리	1,877	
	종계-병아리(육용)	마리	1,123	
	종계-병아리(산란용)	마리	3,400	
	종계-병아리(토종닭)	마리	2,533	신설
	토종닭-병아리	마리	229	신설
	토종닭-중추	마리	1,036	신설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89,000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3,730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664	
	오리-중추	마리	2,564	
	종오리-새끼	마리	4,786	
	원종오리-새끼	마리	39,500	신설
	꿀벌-개량종(1군)	군	140,760	
	인공사육(쟁)-병아리(2-4개월령)	마리	1,665	
	사슴-자육	마리	510,033	
	사슴-자육(엘크)	마리	688,000	
사슴-자육(꽃사슴)	마리	140,000		
사슴-자육(레드디어)	마리	180,000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528,000		
말(경주마)	마리	12,824,400		
개(강아지)	마리	27,500		
칠면조-병아리	마리	3,760		
거위-병아리	마리	4,631		
메추리-새끼	마리	137		
지렁이	m ²	3,228		
금계-병아리	마리	30,000		
은계-병아리	마리	74,980		
백한-병아리	마리	40,000		
공작-병아리	마리	250,000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5) 누에 유실·폐사	유실/폐사-봄누에	kg	11,000	
	유실/폐사-가을누에	kg	11,000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선박	동력선-강선	톤	7,000,000	
	동력선-FRP	톤	8,440,000	
	동력선-목선	톤	7,000,000	
	무동력선-FRP	톤	5,023,000	
	무동력선-목선	톤	3,484,000	
(2) 어망어구-정치망류	대모망(대)-남해	통	52,376,000	
	개대망(대)-남해	통	53,655,000	
	개대망(중)-남해	통	48,051,000	
	개대망(소)-남해	통	46,041,000	
	낙망(대)-남해	통	53,166,000	
	낙망(대)-동해	통	112,700,000	
	낙망(중)-동해	통	46,150,000	
	낙망(소)-남해	통	29,080,000	
	낙망(소)-서해	통	11,632,000	
	각망(대)-남해	통	43,409,000	
	각망(중)-동해	통	17,697,000	
	각망(중)-남해	통	1,462,400	
	각망(중)-서해	통	600,000	
	소대망(대)-남해	통	58,111,735	
	소대망(중)-남해	통	37,612,300	
	소대망(소)-남해	통	29,740,000	
	죽방렴(대)-남해	통	34,284,000	
	죽방렴(소)-남해	통	27,366,000	
- 정치성어구류	낭장망-서해	통	2,750,000	
	낭장망-남해	통	2,750,000	
	각망-남해	통	1,065,400	
	삼각망-서해	통	1,450,000	
	호망-동해	통	11,210,000	
	호망-남해	통	4,140,000	
	건망-동해	통	29,260,000	
	건망-남해	통	9,790,000	
	승망-남해	통	1,727,000	
	근해안강망	통	4,736,800	
	연안개량안강망	통	3,119,000	
	각망-내수면	통	190,000	
	돌추 낭장망 200코(대형)	통	148,000	
	뒹자망-서해	틀	7,139,324	
- 유자망류	공치-동해(1척기준:400폭)	폭	66,000	
	오징어-동해(1척기준:50폭)	폭	55,000	
	멸치-남해(1척기준:25폭)	폭	368,120	
	삼치-남서해(1척기준:230폭)	폭	72,410	
	참조가-서해(1척기준:350폭)	폭	44,850	
	학꽂치-동남해(1척기준:15폭)	폭	55,89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고정자망류	방어-동해(1척기준:20폭)	폭	133,460		
	명태-동해(1척기준:150폭)	폭	70,840		
	양미리-동해(1척기준:20폭)	폭	209,000		
	꽃게-서해(1척기준:30폭)	폭	30,000		
	청어-동해(1척기준:30폭)	폭	87,000		
	도루묵-동해(1척기준:50폭)	폭	40,000		
	아귀-동남해(1척기준:25폭)	폭	72,000		
	넙치-동해(1척기준:30폭)	폭	32,000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000		
	꽃게-서해(1척기준:1000폭)	폭	18,973		
	자망-내수면(1척기준:3폭)	폭	22,000		
	- 인망류	멸치권현망-남해(1척기준)	통	26,461,500	
		붉은대게-동해(1척기준:1,200개)	개	10,725	
	- 통발류	붕장어(그물)-전해역(1척기준:1,000개)	개	4,760	
		붕장어(플라스틱) * 5,000개	개	1,229	
- 낚시류:주낙	골뱅이-동해(1척기준:2,000개)	개	4,770		
	꽃게-서해(1척기준:1500개)	개	8,234		
	꽃게(1척기준:2500개)	개	2,800		
	물메기-남해(1척기준:1500개)	개	4,483		
	쭈꾸미-서해(1척기준:10,000개)	개	358		
	통발-내수면(1척기준:100개)	개	5,500		
	낙지(1척기준:2500개)	개	1,822		
	도다리(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000		
	쥐치(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000		
	문어단지-남해	개	700	신설	
	문어통발-남해	개	3,200	신설	
	통발-남해	개	2,540	신설	
	명태-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45		
	넙치-남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23,840		
	농어-서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37,510		
	붕장어-남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25,840		
	옥돔-남해(1척기준:70바스켓)	바스켓	17,580		
	문어-동해(1척기준:30바스켓)	바스켓	9,750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11,413		
	주낙-내수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32,000		
	주낙-농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15,080		
	삼치-동남해(1척기준:6개)	개	33,200		
	장어-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000		
	도다리-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000		
	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 패류	굴(간석지투석식)	ha	11,477,000	
굴(연승수하식)-100m당		줄	403,879		
굴(수평망식)-3.6㎡당		대	220,000		
굴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602,305		

방재정보광장

별 령 정 보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해조류	골채묘(간이수하식)-25×2m당	대	349,112	
	피조개(천해살포식)	ha	582,820	
	피조개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401,958	
	바지락(간석지살포식)	ha	553,000	
	홍합(연승수하식)-100m당	줄	416,750	
	새고막(천해살포식)	ha	746,000	
	새고막채묘(지주수평식)-100m당	대	159,000	
	고막(간석지살포식)	ha	423,500	
	가무락(간석지살포식)	ha	1,130,000	
	동죽(간석지살포식)	ha	230,000	
	백합(간석지살포식)	ha	2,163,200	
	전복(천해투석식)	ha	2,444,000	
	전복(연승수하식)-100m당	줄	1,532,500	
	전복(육상수조식3.3m ²)	m ²	115,252	
	전복(해상가두리-내파성 5×5m)	칸	1,094,000	
	전복종묘생산(육상수조식3.3m ²)	m ²	117,975	
	가리비(연승채롱식)-100m당	줄	4,332,000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100m당	줄	2,595,000	
	가리비(천해살포식)	ha	250,000	
	가리비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2,244,550	
	진주조개(연승수하식)-100m당	줄	762,575	
	키조개(천해이식)	ha	1,428,800	
	꼬시래기(연승수하식 100m)	줄	64,200	
	김(지주망홍식)-2.2×40m당	책	325,000	
	김(부류망홍식)-2.2×40m당	책	454,800	
	김(지주죽홍식)-1.8×40m당	책	177,000	
	미역(연승수하식)-100m당	줄	230,572	
	다시마(연승수하식)-100m당	줄	165,000	
	툇(연승수하식)-100m당	줄	118,000	
	참모자반(연승수하식)-100m당	줄	96,525	
	매생이(2.2m×40m)	책	83,160	
	- 어류	어류양식(육상수조식)	m ²	125,537
어류양식(해상가두리)-5×5m당		칸	1,461,000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5×5m당		칸	2,587,000	
어류양식(외해표층가두리)-내파성Ø40m		칸	48,823,856	신설
어류양식(외해표층가두리)-내파성Ø25m		칸	25,882,825	신설
- 기타류	종묘생산(육상수조식)	m ²	74,787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654	
	우렁챙이(연승수하식)-100m당	줄	783,812	
	성계(연승수하식)-100m당	줄	1,373,000	
	새우(축제식)	ha	13,000,000	
- 내수면양어장	미더덕류(판그물 100m)	줄	344,775	
	미더덕류(봉그물 100m)	줄	651,630	
	양어장(철근콘크리트)	m ²	102,070	
	가두리양어장(5×5m×4칸)	조	2,748,570	
	관리사	m ²	139,15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기타시설	양어장판넬지붕형-철골구조	m ²	121,550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654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4m×6m)	m ²	833,333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m ²	2,480,159	
	양식수산물처리시설(18m×22m)-간이	m ²	202,020	
	소각식분료처리시설	m ²	4,000,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PE무결, Ø40mX16m)	m ²	26,400,000	신설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PE무결, Ø40mX16m)	m ²	11,920,000	신설
- 철거비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낚셀 Ø40mX16m)	m ²	6,880,000	신설
	수산증양식시설철거	지수	재난지수의10%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패류	굴(단련종패142연)-수하식 100m	줄	568,000	
	전복(2cm미만)-투석식:2만미/ha, 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350	
	전복(2cm이상)-투석식:2만미/ha, 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770	
	피조개(각장2cm내외,1톤)-살포식	ha	6,000,000	
	바지락(각장1~2cm,3톤)-살포식	ha	3,750,000	
	홍합(각장2~3cm,142연)-수하식	100m	137,500	
	새고막(각장2cm내외,1톤)-살포식	ha	1,650,000	
	고막(각장2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가무락(각장2.5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동죽(각장1~2cm,3톤)-살포식	ha	900,000	
	백합(각장1~3cm,3톤)-살포식	ha	15,000,000	
	가리비(각장5~7cm,13천미)-수하식	100m	1,050,000	
	가리비(각장5~7cm,15천미)-채롱식	100m	1,050,000	
	가리비(각장5~7cm,38천미)-귀매달이식	100m	2,660,000	
	가리비(각장3~5cm,100천미)-살포식	ha	3,500,000	
	진주조개(각고5cm내외,8,820미)-수하식	100m	2,500,000	
	진주조개(직경7mm,핵2관)	핵	1,400,000	
	키조개종패(이식, 각장 15~20cm)	ha	20,000,000	
	굴(각장 1cm내외, 수평망식)	마리	16	
	굴(각장 7~10cm내외, 수평망식)	마리	140	
- 해조류	김(50개/상자,2상자)-건홍식	책	10,000	
	미역(종묘수량150m)-수하식만기산	100m	12,500	
	미역(종묘수량150m)-조기산	100m	17,500	
	다시마(종묘수량150m)-수하식	100m	20,000	
	툰(5~20cm,15kg)-수하식	100m	100,000	
	참모자반(종묘수량160m)-수하식	100m	100,000	
	우렁쉥이(종묘량3,000m)-수하식,줄	100m	1,841,400	
	우렁쉥이종묘-연승수하식,줄	100m	468,600	
- 기타류	성게(체장2~3cm,1,500미)-수하식	100m	900,000	
	새우(체장2cm내외,200천미)-축제식	ha	1,225,000	

방재정보광장

별첨 **별첨** **정보**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해면양식어류	새우(체장2cm내외)-육상수조식	마리	10	
	다슬기-각고0.7~1.4cm내외	kg	74,250	
	해삼(3~4)cm	마리	176	
	방어(작은고기5~7cm)	마리	600	
	방어(큰고기)	마리	1,708	
	넙치(작은고기5~7cm)	마리	521	
	넙치(큰고기)	마리	2,900	
	우럭(작은고기5~7cm)	마리	402	
	우럭(큰고기)	마리	1,880	
	도미(작은고기5~7cm)	마리	410	
	도미(큰고기)	마리	3,040	
	농어(작은고기5~7cm)	마리	400	
	농어(큰고기)	마리	3,280	
	노래미(작은고기5~7cm)	마리	341	
	노래미(큰고기)	마리	1,925	
	볼락(작은고기5~7cm)	마리	360	
	볼락(큰고기)	마리	3,850	
	능성어(작은고기5~7cm)	마리	1,600	
	능성어(큰고기)	마리	15,890	
	쥐치(작은고기7~8cm)	마리	350	
	쥐치(큰고기)	마리	3,280	
	송어(작은고기5~8cm)	마리	400	
	송어(큰고기)	마리	1,920	
	고등어(작은고기5~8cm)	마리	200	
	고등어(큰고기)	마리	1,750	
	전어(작은고기5~7cm)	마리	32	
	전어(큰고기)	마리	250	
	강도다리(작은고기5~7cm)	마리	1,580	
	강도다리(큰고기)	마리	4,515	
	쌈뱅이(작은고기 5~7cm)	마리	180	
	쌈뱅이(큰고기)	마리	2,800	
	황점볼락(작은고기 5~7cm)	마리	213	
황점볼락(큰고기)	마리	4,150		
복어(작은고기)	마리	240		
복어(큰고기)	마리	2,000		
민어(작은고기)	마리	200		
민어(큰고기)	마리	1,000		
감성돔(작은고기5~8cm)	마리	160		
감성돔(큰고기)	마리	2,680		
돌돔(작은고기5~7cm)	마리	160		
돌돔(큰고기)	마리	1,400		
참다랑어(작은고기 30cm이하)	마리	40,000		
참다랑어(큰고기 80cm이상)	마리	400,000		
- 내수면양식어류	송어(작은고기4~5cm)	마리	228	
	송어(큰고기)	마리	2,320	
	잉어(작은고기3~5cm)	마리	66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잉어(큰고기)	마리	735	
	뱀장어(작은고기 4~5cm,0.2g)	마리	1,500	
	뱀장어(큰고기)	마리	2,750	
	향어(작은고기 3~5cm)	마리	66	
	향어(큰고기)	마리	1,565	
	가물치(작은고기 5~7cm)	마리	280	
	가물치(큰고기)	마리	8,000	
	메기(작은고기 5~7cm)	마리	143	
	메기(큰고기)	마리	806	
	틸라피아(작은고기 5~6cm)	마리	240	
	틸라피아(큰고기)	마리	2,800	
	은어(작은고기 3~4cm)	마리	210	
	은어(큰고기)	마리	840	
	미꾸리(작은고기 3~4cm)	마리	30	
	미꾸리(큰고기)	마리	60	
	자라(작은고기 3~4cm)	마리	3,200	
	자라(큰고기)	마리	8,847	
	산천어(작은고기 4~5cm)	마리	560	
	산천어(큰고기)	마리	3,200	
	동자개(작은고기 5~6cm)	마리	137	
	동자개(큰고기)	마리	260	
	붕어(작은고기 3~5cm)	마리	63	
	붕어(큰고기)	마리	148	
	우렁이(각고1.3cm내외)	kg	3,395	
	대농갱이(작은고기 5~7cm)	마리	110	
	대농갱이(성어 1/2고기)	마리	360	
	철갑상어(작은고기 10~15cm)	마리	1,600	
	철갑상어(성어 1/2고기)	마리	9,000	
	쏘가리(작은고기 3~5cm)	마리	366	
	쏘가리(성어 1/2고기)	마리	1,284	
	버들치(작은고기 2~3cm)	마리	12	
	버들치(성어)	마리	60	
	비단잉어(성어)	마리	10,000	
	열대어 구피(드래곤헤드-3cm)	마리	100	
	열대어 구피(브론즈-3cm)	마리	160	
	열대어 구피(점원-3cm)	마리	280	
	열대어 구피(슈퍼화이트-3cm)	마리	1,200	
	열대어 구피(플레드-3cm)	마리	1,200	
	열대어 플레티(2cm)	마리	100	
	열대어 엔젤(3cm)	마리	280	
	열대어 고리도라스(2cm)	마리	60	
	열대어 제부라(3cm)	마리	40	
	열대어 블랙데트라(2cm)	마리	60	
	황복(작은고기 4~5cm)	마리	200	
	황복(성어 25cm)	마리	12,000	

방재정보광장